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강 석 주 의 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환경복지과장)	일 자	질의: 2001. 12. 4 답변: 2001. 12. 5
회 의	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 (감사활동2차)		

【질의요지】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001년 접수처리내역

【답변요지】

□ 법령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내지제26조(급여의결정),
제29조내지제30조(급여의변경, 중지등)

□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건수는 218으로

신규선정 108가구, 보호중지 108가구, 재산금액기준특례 2가구입니다.

□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소득평가액 기준

- 1인가구 33만원, 2인가구 55만원, 3인가구 76만원, 4인가구 96만원,
5인가구 109만원, 6인가구 123만원

※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3만원씩 증가

○ 재산금액기준

- 1~2인가구 31,000천원, 3~4인가구 34,000천원, 5인이상가구 3,800천원

○ 재산실물기준

- 주택은 전용면적 15평(50㎡)이하 자가주택소유자, 전용면적 20평(66㎡)이하 임대주택거주자

- 농지는 농가호당 평균 경지면적 1.4㏊이하 소유자

- 승용차 소유자는 수급자 제외

○ 부양의무자 기준
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가구,

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

※ 불입 : 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자 명단 1부
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중지명단 1부.